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